

2024. 6. 11. (화) 10:00
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도시교통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 개정('23.10.19. 시행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방법 및 절차 규정
(제21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○ 부서협의결과

1) 협의기간 : 2024. 4. 3. ~ 4. 9.

2) 협의결과

- 비용추계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○ 입법예고 결과

1) 예고기간 : 2024. 4. 19. ~ 5. 9. (20일)

2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○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은 개정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